

VI. 예비비 사용 보고

1. 시·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

1. 시·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
-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
 -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보고

□ 사업개요

【 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 】

-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개요
 - 운영병원 : 시립병원 및 민간·국립병원
 - 운영방법 :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‘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(운영병원)’으로 섭외·지정하고, 지정된 협력병원은 운영기간 동안 내·외부인력을 활용하여 담당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
- 의료지원반 기능 및 역할
 - 환자 건강관리 : 기초 문진 및 일일 건강관리, 전원 및 격리해제 결정 등
 - 진단검사, 의약품·재료·장비 관리 등
- 소요예산 : 11,656백만원 (’21년 상반기 6개월 운영기준)
 - 국비 5,828백만원, 시비 5,828백만원 (국50:시50)

【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(인건비) 】

- 운영현황 : 종로구 생활치료센터 등 23개구 24개소
- 역할분담 : 센터 설치 총괄 및 경비부담(서울시), 운영 관리(자치구)
- 지원내용 : 24개 구 센터의 의료·행정인력 인건비 2,3차분 지원
 - ’20.12월 1차분 기교부 : 3,446백만원
- 소요예산 : 5,486백만원
 - 국비 2,743백만원, 시비 2,743백만원 (국50:시50)

□ 예비비 사용 사유

- 지자체 지정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바 (중앙사고수습본부-2538('21.1.22.)호), '21년 상반기 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(인건비)을 위한 매칭 시비 8,571백만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,
- 소요경비 중 의료인력 근무수당은 재난관리기금 7,965백만원을 사용하고, 기금 사용이 불가능한 행정인력 근무수당 등 인건비 606백만원은 예비비 사용을 통해 별도 자원 확보 필요

□ 예비비 사용 내역

- 예비비 사용승인액 : 총 606,000천원
 - 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(기타보상금) : 466,000천원
 -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지원(자치단체경상보조금) : 140,000천원

○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예산과목		예산현액	사용승인액		승인일
			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보건의료 정책과	공공보건·의료 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	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	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	일반보전금 (301)	기타보상금 (12)	(×466,000) 466,000	(×-) 466,000	-	'21. 2. 8.
				자치단체 등 이전 (308)	자치단체 경상보조금 (01)	(×140,000) 140,000	(×-) 140,000	-	